

Vol.1531

법원공보

2017. 11. 1. WED.



법원행정처

● 목 차

신법령 목록 1471

인 사 1472

공 고 1475

● 신법령 목록 (2017. 10. 1. ~ 10. 15.)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4901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13	19109	5
법률제1490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
【부령】				
해양수산부령제261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	2017. 10. 10	19106	4
보건복지부령제527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10. 13	19109	6
보건복지부령제529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56호

2017. 9. 1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사 명 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정(金洵廷)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0. 26.부터 2018. 2. 14.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신영(朴信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0. 21.부터 2018.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영희(姜英嬉)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0. 1.부터 2018. 2. 18.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신향(南信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0. 29.부터 2019. 2. 17.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윤희(金倫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0. 10.부터 2018. 2. 28.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지숙(尹智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0. 9.부터 2018.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수정(徐水晶)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0. 8.부터 2018. 2. 14.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최민혜(崔玟慧)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0. 10.부터 2017. 12. 9.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화진(李和珍)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0. 11.부터 2018. 2. 10.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명화(尹明華)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0. 24.부터 2018. 2. 28.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나래(姜나래)	2017. 10. 4.부터 2019. 2. 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수진(李秀眞)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7. 10. 1.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안재천(安在千)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7. 10. 18.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신영(朴信映)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2017. 10. 2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7호

2017. 9. 1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겸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곽용현(郭鏞憲)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에 겸임함
			(2017. 9.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9호

2017. 9. 2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현(金都現)	2017. 10. 16.부터 2017. 11. 10.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끝.

● 공 고

관인폐기 공고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2017.02.02. 및 2017.07.31.)에 의하여 2017.03.01.부터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를 부산서부지원 소속으로 변경하고, 2017.07.31.부터 부산서부지원 등기과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하등기소와 강서등기소가 폐소되고 그 관할구역을 부산서부지원 등기과로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사하등기소, 강서등기소에서 사용하던 관인을 법원사무관리 규칙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폐기하고,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0조, 동 시행내규 제5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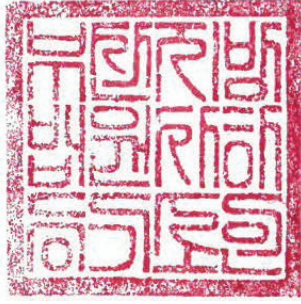

붙 임 : 폐기 관인 공고 목록 1부.

2017.09.27.

부 산 지 방 법 원 장



[붙임] 폐기 관인 공고 목록

관인명	인영	최초사용 연월일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폐기사유
부산 지방 법원 북부산 등기소인		1994. 01.01.	2017. 03.0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대법원규칙 제2716호)
부산 지방 법원 사하 등기소인		1997. 09.01.	2017. 08.0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대법원규칙 제2752호)
부산 지방 법원 강서 등기소인		1997. 12.01.		